

서울중앙지방법원 2021. 7. 5 선고 2019가단58996 판결 [구상금 청구의 소]

전 문

원 고 A연합회

소송대리인 변호사 김호진

원고 보조참가인 B

소송대리인 변호사 박철민

피 고 C 주식회사

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여명

담당변호사 노승익

변 론 종 결 2021. 5. 24.

판 결 선 고 2021. 7. 5.

주 문

1.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.
2. 소송비용 중 원고와 피고 사이에 생긴 부분은 원고가, 원고 보조참가인과 피고 사이에 생긴 부분은 원고 보조참가인이 각 부담한다.

청 구 취 지

피고는 원고에게 42,791,15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. 12. 11.부터 이 사건 소장 부분 송달일까지는

연 5%,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12%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.

이 유

1. 기초사실

가. 원고는 (차량번호 1 생략) 영업용 택시(이하 '원고 차량'이라 한다)에 관하여 그 소유자인 D 주식회사와 사이에 공제계약을 체결한 공제사업자이고, 원고 보조참가인(이하 '참가인'이라 한다)은 원고 차량의 운전자이며, 피고는 (차량번호 2 생략) 차량(이하 '피고 차량'이라 한다)의 소유자이고, E은 피고 차량의 운전자이다.

나. 2013. 10. 6. 05:30경 서울 강북구 번동 433-1 부근 도로에서 참가인이 운전하던 원고 차량과 E이 운전하던 피고 차량이 부딪치는 사고(이하 '이 사건 사고'라 한다)가 발생하였다.

다. 이 사건 사고로 원고 차량에 탑승 중이던 승객 F, G이 각 상해를 입었고, 원고는 원고 차량의 공제자로서 2014. 12. 10.까지 F에게 35,935,140원, G에게 6,856,010원 합계 42,791,150원을 공제금으로 지급하였다.

[인정근거] 다툼 없는 사실, 갑가 제2, 3호증의 각 1, 2, 을 제1호증의 5, 6의 각 기재, 변론 전체의 취지

2. 주장 및 판단

가. 당사자들의 주장

원고와 참가인은, 이 사건 사고는 피고 차량 운전자의 전적인 과실로 발생한 것이거나, 참가인에 비하여 피고 차량 운전자의 과실이 큰 상태에서 발생한 것이고, 원고가 원고 차량의 공제사업자로 피해자들에게 공제금 합계 42,791,150원을 지급하였으므로, 피고 차량의 소유자인 피고는 피해자들을 대위한 원고에게 위 42,791,150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.

이에 대하여 피고는, 이 사건 사고는 참가인의 전적인 과실로 발생한 것으로, 피고 차량 운전자는 차량

운행에 주의를 게을리 하지 않았다고 주장한다.

나. 인정사실

(1) 이 사건 사고는 서울 강북구 번동 433-1에 있는 번동사거리 교차로(명칭은 사거리이나 실제로는 아래에서 보는 바와 오거리이다)에서 발생하였는데, 사고 장소의 약도는 별지 ‘사고 장소 약도’와 같다.

(2) 위 번동사거리 교차로는 수유사거리, 강북구청, 신창동, 월계사거리 방향의 도로 외에 H한의원 방향의 편도 1차로 도로가 설치된 오거리 교차로이다.

(3) 참가인은 원고 차량을 운전하여 수유사거리 방향에서 월계사거리 방향으로 편도 3차로를 따라 약 40km의 속도로 진행하였는데, 교차로 진입 당시 그곳 전방 신호가 적색이었다. 참가인은 교차로에 진입하여 진행 중 별지 사고 장소 약도에 충돌 지점으로 표시된 곳에서 때마침 H한의원 방면에서 수유사거리 방향으로 좌회전 신호에 따라 좌회전하던 E이 운전하는 피고 차량을 뒤늦게 발견하였으나 미처 피하지 못하고 원고 차량 우측 앞 범퍼로 피고 차량 좌측 앞 범퍼를 들이 받았다.

(4) E은 전방 신호가 좌회전 신호로 바뀌기 전에 별지 사고현장 약도 중 H 한의원 방면의 횡단보도 위에서 대기하고 있다가 전방 신호가 좌회전 신호로 바뀌자 피고 차량을 운행하여 좌회전을 하게 되었고, 그 후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다.

[인정근거] 다툼 없는 사실, 갑나 제3호증, 제7호증의 1, 2, 을 제1호증의 3, 4의 각 기재, 변론 전체의 취지

다. 판단

위 인정사실과 같이 피고 차량 운전자 E은 오거리 교차로에서 전방 신호에 따라 좌회전을 하였는바, 그 경우 피고 차량 운전자에게 수유사거리 방향에서 월계사거리 방향으로 진행하는 차량이 진행하다가 피고 차량을 충격한 것을 대비하여 좌우를 살필 주의의무까지 있다고 보기 어렵다. 따라서 E이 전방 신호에 따라 피고 차량을 좌회전을 한 이상 그 차량 운행에 주의를 게을리 하였다고 볼 수 없다. 또한 E은 신호 대기 중 피고 차량을 횡단보도 위에 정차한 상태로 두었으나 피고 차량이 그

횡단보도를 벗어나 교차로 쪽으로 진입한 상태에서 대기한 것이 아니어서 이를 주의의무 위반으로 평가하기 어렵다. 참가인이 제출한 갑나 제1, 2, 5, 6, 8, 10호증(가지번호 포함)의 각 기재는 위 사실인정과 판단에 방해가 되지 아니한다. 결국 피고의 무과실 주장은 이유 있다.

따라서 이 사건 사고와 관련하여 피고 차량 운전자에게 차량 운행에 있어 주의를 게을리 하였다고 볼 수 없는 이상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.

3. 결론

그렇다면,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,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.

판사 김진영

(별지)

사고 장소 약도



